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안

1. 대상지역

편입되는 지역		편입받는 지역
ㅇ주 소 : 서대문구 북가좌동 275-1 ㅇ면 적 : 798.1㎡(241.8평) ㅇ필지수 : 1필지 ㅇ인구수 : 없 음	➡	은평구 응암동

2. 조정사유

가. 응암 4-2지구 11구획 재건축조합에서 건설 중인 남청파인힐아파트가 은평구와 서대문구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입주(2001.10월 예정)시 각종 불편이 예상되므로,

나. 자치구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행정구역 경계변경 추진

3. 조정규모

구 분	지역명 ( )는 행정동	현 행			조 정			조 정 후		
		면 적 (㎢)	세 대	인 구 (명)	면 적 (㎢)	세 대	인 구 (명)	면 적 (㎢)	세 대	인 구 (명)
편입되는 지역	서대문구	17.60	131,284	368,107	△0.000 7981	-	-	17.5992019	131,284	368,107
	북가좌동 (북가좌2동)	1.38	17,991	53,722	△0.000 7981	-	-	1.3792019	17,991	53,722
편입받는 지역	은 평 구	29.72	159,094	469,250	+0.000 7981	-	-	29.7207981	159,094	469,250
	응 암 동 (응암4동)	2.64	31,615	92,124	+0.000 7981	-	-	2.6407981	31,615	92,124

4. 조정시의 장단점

장 점 (찬성사유)	단 점 (반대사유)
ㅇ주택건설사업 완료후 입주 주민들의 생활 불편해소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기여 ㅇ당초 해당지역이 절개지로 종합적인 재해 대책 수립·시행이 용이	없 음

5. 지역의견

가. 행정기관의견

서대문구청장(편입되는 지역)	은평구청장(편입받는 지역)
○북가좌동 275-1호(체비지)에 건설 중인 아파트는 은평구와 서대문구의 경계에 위치함에 따라 행정구역(구간) 경계변경이 불가피한 지역으로 ○행정구역 경계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1개의 아파트에 2개의 행정구역이 포함되어, 향후 재산세 등 제세금을 2개 구청에서 부과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구간경계를 조정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됨.	○응암4-2지구11구획 재건축조합에서 건설중인 남청파인힐아파트가 은평구와 서대문구에 걸쳐 있어 구간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향후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구역(구간경계)변경을 조정함이 타당함. ○또한, 당초 해당지역이 위험절개지로 종합적인 재해대책을 위해서도 필요함.

나. 주민의견 : 거주주민 없음(재건축조합에서는 찬성)

다. 당해 지방의회 의견

1) 서대문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 찬성(2001.2.28)

2) 은평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 찬성(2001.5.12)

6. 종합의견

가. 응암4-2지구11구획에 건설 중인 남청파인힐아파트(1개동)는 은평구와 서대문구의 경계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자치구간(은평구-서대문구) 경계변경이 불가피한 지역으로,

나. 만약 행정구역 경계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1개의 아파트단지가 2개의 행정구역에 위치하여, 세금부과·선거구관리·쓰레기처리 등이 각각의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이루어져 일상생활에 있어 주민불편뿐만 아니라 상당한 행정비능률이 예상되므로,

다.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남청파인힐아파트 현황 >

○규 모 : 아파트 1개동 86세대, 지하1층 지상18층

○면 적 : 2,305.4㎡

-은 평 구 응 암 동 : 1,507.3㎡

-서대문구 북가좌동 : 798.1㎡

○지형특성 : 서대문구와 은평구 경계에 위치하며, 당초 토사로 이루어진 경사도 60°, 표고차 약 20m, 총연장 180m의 절개지였으나, 현재는 평탄화작업을 거쳐 아파트 신축 중에 있음.

학교급식실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교육위원회가 실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학교급식실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함.

Ⅰ. 행정사무조사 실시 경위

가. 2001년 2월 27일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김성규의원 외 40인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학교급식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제출.

나. 2001년 3월 13일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실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의안번호 838)이 원안가결 됨.

다. 2001년 3월 14일 의장은 "학교급식실태 행정사무조사요구서"를 우리위원회에 회